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최상목

●대통령령 제34154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별표 4 7606.12의 규격 등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5]

2024년 1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3		양파·샬롯(shallot)·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9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대파(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3,000톤

[별표 6]

2024년 1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303		냉동어류[「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멸치[엔그라우리스(<i>Engraulis</i>)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사르디노프스(<i>Sardinops</i>)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고등어[스콰머 스콰브루스(<i>Scomber scombrus</i>)·스콰머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스콰머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줄무늬 고등어(<i>Indian mackerels</i>)[라스트렐리거(<i>Rastrelliger</i>)속], 삼치[스콰머 로모러스(<i>Scomberomorus</i>)속], 전갱이[트라커러스(<i>Trachurus</i>)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i>Caranx</i>)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i>Rachyentron canadum</i>)], 병어[팜푸스(<i>Pampus</i>)속], 풍치[콜로라비스 사이라(<i>Cololabis saira</i>)], 가라지[데캡			

		테러스(<i>Decapterus</i>)속], 열빙어 [말로투스 빌로서스(<i>Mallotus villosus</i>)],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점다랑어 [유티너스 아피니스(<i>Euthynnus affinis</i>)], 버니토[사르다(<i>Sarda</i>)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Istiophoridae</i>)].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54	고등어[스콤퍼 스콤프루스(<i>Scomber scombrus</i>)·스콤퍼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스콤퍼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 것	0	20,000톤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7	2	그 밖의 신선란			
0407	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수입전량
0803		바나나[플랜틴(<i>plantain</i>)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	90	기타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150,000톤

0804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아보카도(avocado) ·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30	파인애플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40,000톤
0804	40	아보카도(avocado)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1,000톤
0804	50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	망고(mango)(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14,000톤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10	오렌지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5,000톤
0805	4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8,000톤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	10	초본류 딸기		0	6,000톤
0811	90	기타	밤, 대추, 잣과 기타 견과류를 제외한다.	0	15,000톤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	30	종자	꼬투리를 벗긴 것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	810톤
1202	4	기타			
1202	42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	90	기타			
		1. 토마토 페이스트(paste)(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2007		잼 · 과실젤리 · 마멀레이드(marmalade) ·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7	10	균질화한 조제품	견과류의 것은 제외한다.	0	수입전량
2007	9	기타			

2007	91	감귤류의 과실		0	수입전량
2007	99	기타	견과류의 것은 제외한다.	0	수입전량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20	파인애플		5	수입전량
2008	30	감귤류 과실	유자는 제외한다.	5	수입전량
2008	40	배		5	수입전량
2008	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 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	97	혼합물			
		1. 과실 각테일			
		가.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10	수입전량
		나. 기타		5	
		2. 기타		5	
2008	99	기타			

		6. 기타		5	수입전량
2009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 [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	2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 포멜로(pomelo) 주스			
2009	21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0	수입전량
2009	29	기타		0	
2009	3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009	31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레몬주스	10	수입전량
2009	39	기타	레몬주스	10	
2009	7	사과주스			
2009	71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5	수입전량
2009	79	기타		5	
2009	90	혼합 주스			
		2. 기타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10	

2009	8	그 밖에 한 가지 과일·견과류·채소 주스			
2009	8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주스,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10	수입전량
2009	89	기타 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와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이외의 과일·견과류 주스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와 기타 견과류 주스는 제외한다.	10	
2009	89	기타 2. 채소 주스		0	수입전량
2009	90	혼합 주스 1. 채소로 만든 것		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바나나 및 망고 등 24개 물품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